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	4
2. 법체계와 주요내용	6
IV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8
1. 총칙	8
2. 지역사회혁신 계획 수립	11
3. 지역사회혁신 추진체계 마련	15
4. 지역사회혁신의 기반 조성 등	22
5. 부칙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5.
3. 회부연월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가령, 쓰레기 처리와 같은 동네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나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과거의 대응 방식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방안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문제 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 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은 지역사회혁신 관련 계획 수립, 추진체계 마련, 기반 조성 등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방안을 적용하는 과거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문제를 단위로 하여 상향식의 문제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과거 논의현황을 살펴 보면, 제21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여 모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국회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21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2103568	임기만료폐기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의원	2113383	임기만료폐기

[제21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¹⁾

<제393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2.2.7.>

(반대의견)

-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현행법 체계로 지역문제 해결 가능
- 지역사회혁신계획 등은 지역발전계획, 도시계획 등 지역단위에서 수립되는 계획 활용 필요

(찬성의견)

- 제정안은 지역주민 등이 창의적으로 지역사회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와 다르며,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발전계획, 도시계획 등 하향식 계획과 달리 지역주민 등이 수립하는 주민자치에 입각한 상향식 계획임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법안 2건과 마을공동체 법안 2건을 통합하여 심사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104140),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107496)

2. 법체계와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여,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주민 등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계획수립	제6조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제7조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추진체계	제9조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제10조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
	제11조	전담부서의 운영
	제12조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제13조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
제4장 지역사회혁신의 기반 조성 등	제14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6조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
	제17조	국·공유 재산 활용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지속가

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지역사회주체”, “지역사회문제”, “지역사회혁신” 등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며(안 제2조), 지역주민 등의 권리(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② 지역사회혁신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에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안 제8조) **상향식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③ 지역사회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사회혁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지원센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를 두고,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④ 지역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4조), 지역사회혁신 사업에 대한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안 제16조) 및 국·공유 재산 활용의 특례(안 제17조) 등을 규정함.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안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안 제1조), “지역사회주체”, “지역사회문제”, “지역사회혁신” 등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안 제2조), 지역주민 등의 권리(안 제3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등에 대해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2)에 따른 주민을 말한다. 2. “지역사회주체”란 지역주민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3)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주민 등의 권리) ①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하 “지역주민 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

제 정 안

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지역주민은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지방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4)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회혁신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3조) 제정안은 지역주민 등의 권리를 정하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⁵⁾ 「지방재정법」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 제3조는 법령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확인하는 성격의 조문으로 보임.

(안 제4조)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정안의 목적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5조) 지역사회의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여 법률간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권리로 ‘참여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지역사회혁신 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6조(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① 지역주민 등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이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내에서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의 정의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안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시·군·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협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및 제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군·구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등에 관한 기본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 전문인력과의 연계·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및 사업 등의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유희 공유 재산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시·군·구계획은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고,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혁신 지원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가지원 정책 또는 시책 및 그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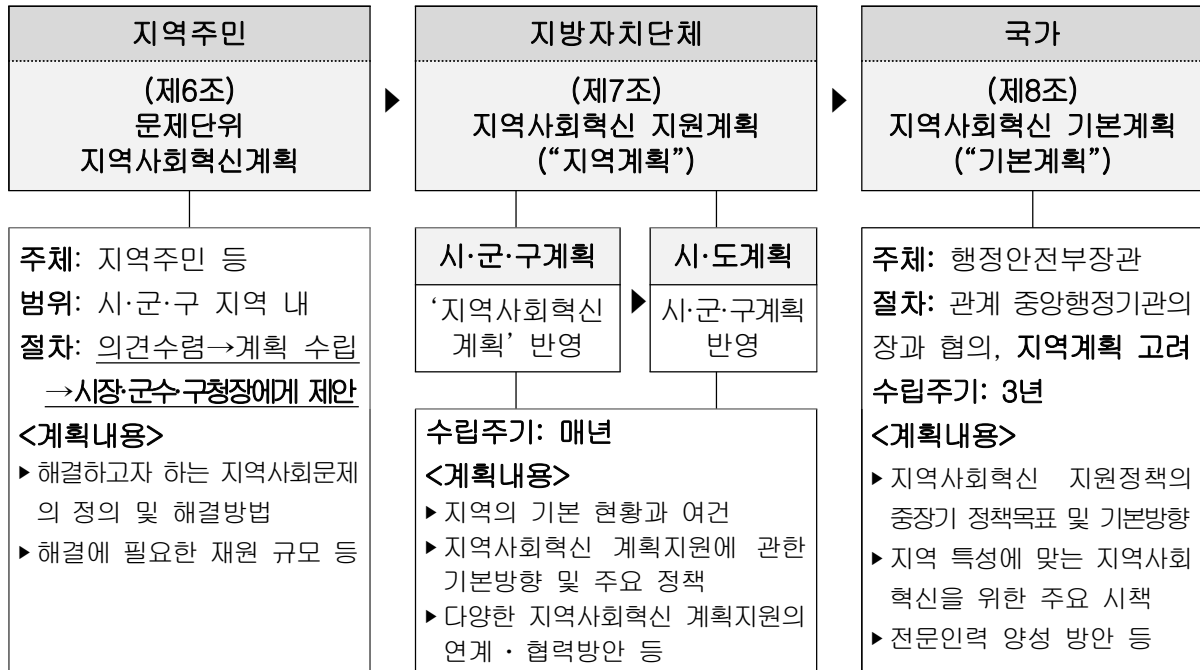
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지역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원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 등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안 제6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등에 관한 기본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군·구계획’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고,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지

역사회혁신 지원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국가지원 정책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

제정안에 따른 지역사회혁신 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문제단위 지역 사회혁신계획 → 지역계획(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 → 기본계획’으로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제단위 지역 사회혁신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사회혁신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기보다 지역주민 등 사적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기반으로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수립·시행하는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 지역사회의 자율적 활동의 방향성까지 제시할 경우,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기존 법령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수립되는 지역발전계획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지역사회혁신 추진체계 마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 정 안
제9조(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①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혁신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지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위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0조(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 ①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전국단위 지역주민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1조(전담부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업무
2.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의 지원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수행
 3. 주민,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2.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사회혁신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4. 지역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지역사회혁신 지원사업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6.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이에 따른 성과 평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사회혁신 추진체계]

구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위원회 (안 제9조 및 제10조)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 심의사항 ▶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혁신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심의사항 ▶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협의·조정
전담부서 (안 제11조)	전담부서	
	▶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업무 ▶ 지역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지역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지원센터 (안 제12조 및 제13조)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행업무 ▶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사업 발굴·수행 ▶ 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수행업무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사회혁신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 지역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원사업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안 제9조 및 제10조,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및 지원정책심의회)

제정안은 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원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6)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에 따른 ‘지원정책심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⁷⁾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6)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⁸⁾,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⁹⁾,

유사 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¹⁰⁾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심의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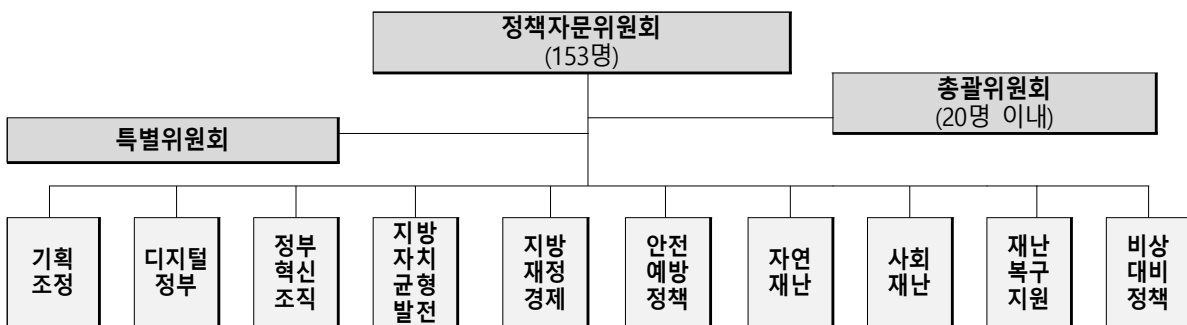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행정안전부 2024년(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 자문위 체계 : 총괄위원회 +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 (총괄위원회) 부 전체업무 관련 사항 논의

※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운영

○ (분과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주요 실·국별 분과 설치

- 실·국별 업무 및 자문수요에 따라 자문 실시

○ (특별위원회) 실·국 수요 반영, 다수 분과 관련사항 논의 및 협업 지원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¹¹⁾으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원정책심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 전담부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부서가 전담부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안 제13조,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정안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 행정기관 소속의 상시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지역위원회(안 제9조) 및 지원정책심의회(안 제10조)는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지역사회혁신의 기반 조성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정안은 지역사회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4조),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안 제16조), 국·공유 재산 활용 등의 특례 규정을 둠(안 제17조).

제 정 안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문제의 현황 및 주요 해결활동, 지원사업,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공유 재산 활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제안한 지역주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감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감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표로 국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하고 있어¹²⁾,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단체·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역주민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감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허용¹³⁾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주민 등의 국·공유재산 사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13)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

용 지원은 다른 단체 및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부 칙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36

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⑤(생략)